

「우주항공청 특별법」 국무회의 의결

-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추진,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「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)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.

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,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,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, 특례 등이 담겨있다.

※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붙임 참조

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, 공청회, 설문조사,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,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하였다.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, 의미 구체화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.

먼저 제정 목적을 보완하여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,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“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,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”으로 구체화하였다.

또한,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,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한편,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다.

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한다.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, 우주항공청 직제,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,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다.

한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최원호 단장은 “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제도기획팀	책임자	과 장	태병민 (044-202-4690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규 (044-202-4693)

□ (성격) 타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

-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·운영하고, 미래 공무원조직의 혁신 모델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형태로 규정(제4조)

□ (기능)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, 정책, 산업 육성 총괄

-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(제5조)
-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, 정책, 산업 육성, 민군협력, 국제 협력, 인재육성, 기반조성 등을 소관(제6조)
 - ※ 「우주개발진흥법」(과기정통부), 「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」(산업부) 등의 개정을 통해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 법률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(부칙 제5조)
 - ※ 「우주개발진흥법」 개정을 통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(동시개정)

□ (조직) 연구개발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으로 구성·운영

- 청장-차장-본부장 체계로 구성하고, 본부는 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며 유연한 운영을 위해 하위 법령에 설치 방식 규정(제5조)
-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(기존 과(課) 단위 조직과 유사)을 신속하게 구성·변경·해체 가능(제7조)
 - ※ 현재는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라 과(課) 단위 조직은 부령에 규정되어 개편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, 우주항공청장은 훈령에 규정하여 1주일 내 가능
- 청장이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제한*없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허용(제7조)

* 현 「정부조직법」에서는 팀장 이상의 보직자 중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을 20% 이하로 제한

□ (인사)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 및 유연한 인사 운영

-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을 달리 적용하여 임용 가능(제8조)
 -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인사 혁신처의 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외 등(①)
 -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 가능(③)
 -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채용방법을 다양화(④)
 - 임기제공무원(1급~9급)의 임용권을 우주항공청장에게 부여(⑥)
 - 직위의 업무 내용, 기간 및 성과목표 등을 약정으로 정하여 임용(⑦)
-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*하여 책정 가능(제9조)
 - * (현행) 인사혁신처장 협의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보수체계 초과 가능
-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을 허용(제10조)
-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약정에 따른 면직사유가 발생할 때 면직 가능, 다만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실시(제11조)
- 소속 임기제 공무원(1급 이상)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하되, 이해충돌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의 백지 신탁에 대한 예외 허용(제12조)
-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민간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퇴직 후 유관 분야에서 취업 또는 관련 업무를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(제13조)

□ (예산) 적시성 있는 예산 지원 및 안정적 예산 구조 마련

-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목표·내용을 변경하고, 청장이 이에 맞춰 기존 예산을 전용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행 가능(14조)
- 국내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 설치 근거 마련(2년 간 시행유예, 제15조)